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인

2020년 5월 19일

국무총리 정세 균

국 무 위 원 추 미 애 법무부장관

◉법률 제17265호

형법 일부개정법률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, 제297조 의2, 제298조,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.

제2편제3장에 제30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5조의3(예비, 음모) 제297조, 제297조의2, 제299조(준강간죄에 한정한다), 제301조(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)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

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, 미성년 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높이고 강간 등의 예비·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.

◇주요내용

- 가.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되,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인 경우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함(제305조제2항 신설).
- 나. 강간,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·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(제305조의 3 신설). <법제처 제공>